

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

1. 단체 기본사항		사업연도	2022-06-23 ~ 2022-12-31
① 법인(단체)명	사단법인 한국보육교육협회	② 사업자등록번호	223-82-728**
③ 대표자 성명	박 [REDACTED]	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	지정일 : 2022-09-30 만료일 : 2024-12-31
⑤ 소재지	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, 11동 1115층(가산동, 가산 테스카이벨리 1차)	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A7C8864F91ABEE29CDDBF1AF335E504B EE8238430BC44469AEE7CD9EB68E8944

⑨ 의무		⑩ 의무이행 여부	⑪ 점검결과
가.	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(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협력·지원,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·협력목적 추가됨)다만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8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-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수행할 것 -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 복지·자선·문화·예술·교육·학술·장학 등일 것	여	해당없음
나.	정관의 내용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	여	해당없음
다.	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	여	해당없음
라.	공익법인등이 실제운영상 (가) 의무를 이행할 것	여	해당없음
⑧	마.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. 다만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	여	해당없음
바.	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	여	해당없음
사.	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할 것	여	해당없음
아.	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	여	해당없음
자.	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	여	해당없음
차.	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	여	해당없음
카.	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	여	해당없음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6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.

년 일 일

제출인 : 사단법인 한국보육교육협회 (단체의 직인)[인]

귀하

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6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2023년 04월 26일

(통보기관의 장)

[인]

국세청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(마목 제외)의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2. ④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은 지정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됩니다.
- 다만,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(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)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.
3. ⑦의 검토 항목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의 공익법인만 해당합니다. 다만, ⑦의 검토 항목 중 '가'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익법인등도 해당됩니다(실제운영상 수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).
4. ⑧ 검토 항목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가목~바목(마목 제외)의 공익법인등이 해당합니다.
5. ⑩의 의무이행 여부란은 공익법인등이 작성하며, ⑪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.

210mm×297mm 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